

---

#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 건의

---

2018. 1.

#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 건의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,530원으로 인상되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‘일자리 안정자금’을 지원하고 있음.

\*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

-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&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

○ 그러나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, 지원요건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으며, 월보수액이 기본급과 통상적수당,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두 포함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음.

\*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

-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

- 보수액 :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, 단 비과세소득 일부(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) 제외.

○ 최저임금 산입범위\*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이 완벽히 상이함.

\*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임금 항목 중 ‘기본급 + 月고정수당’만으로 판단

- 포함되는 임금 : 기본급,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·일률적 수당

- 제외되는 임금 : 각종 복리후생수당, 월단위 아닌 상여금, 초과근로수당 등

### ※ [참고] 주요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

- (프랑스) 현물급여(식사, 주택 등), 상여금, 팁, 휴가수당, 성과수당 등 모두 포함

- (영국) 인센티브, 상여금, 숙박비, 사회보험료(사용자 부담분) 등을 포함

- (일본) 月고정임금만 포함(한국과 동일). 단 식사 등 현물은 실비를 포함

○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보완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외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사료됨.

## □ 대책건의

- 양극화 개선과 구매력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나 인상폭이 매우 커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,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
- 첫째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대폭 상향(50명 미만)조정하여 주시고 월보수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월보수를 2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해 주실 것과
- 둘째,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을 통일되게 설정하여 주심은 물론,
- 셋째,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며,
- 넷째,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만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.